

한국에서 ADR정착화를 위한 상설ADR 기관의 활성화 방안

-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Ways to Expand the Institute of ADR to
Cultivate ADR System in Korea.

- Focused on KCAB -

신 군 재* Koon-Jae Shin

〈목 차〉

- I. 서론
- II. ADR제도의 개요
- III. 대한상사중재원에 관한 SWOT분석
- IV. 대한상사중재원 활성화방안
- V. 결론

주제어 :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 대한상사중재원(KCAB), SWOT분석

* 신라대학교 국제비즈니스학부 조교수

I. 서 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국제통상환경은 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어젠더)와 개별국가간 FTA(Free Trade Agreements; 자유무역협정)라는 2가지 축에 의하여 국제간 교역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는 달리 국제간 교역은 2차산업중심에서 벗어나 1차 상품 및 3차 상품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3차산업과 상품산업이 결합된 복합무역이 등장하였다. 교역의 증가는 분쟁의 증가를, 복합무역은 새로운 형태의 분쟁을 야기시켜, 국제간 분쟁은 더욱 더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법원에 의한 분쟁 해결보다는 당사자간 자체적인 분쟁해결수단인 대체적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라 칭함¹⁾)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각국 및 국제기구에서는 ADR관련 기구를 설립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설 ADR기관으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설립되어 있고, 각 행정법규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ADR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국내기업들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조차도 ADR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여 이를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ADR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상설ADR기관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국내 유일의 상설ADR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과 관련된 SWOT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ADR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1) 국내에서는 대체적분쟁해결제도, 소송외분쟁해결제도, 간이하고 새로운 민사분쟁해결제도, 재판외분쟁처리절차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본 고에서는 대체적분쟁해결제도로 통일하였음.

II . ADR제도의 개요

1. ADR의 개념

ADR 제도에 대하여는 70년대 미국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많은 국가에서 관심과 연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²⁾. 미국의 경우에는 ADR 제도 중 조정(mediation)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반면에 우리 나라의 경우는 중재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ADR은 구속력 여부, 제3자의 개입여부 및 역할 등에 따라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여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는 곤란하다. Coulson은 ADR을 “사적인 분쟁해결제도로서 강제적이라기 보다는 자율적인 해결제도이다”라고 하였다³⁾. Lieberman & Henry는 ADR을 “①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분쟁을 법원 밖에서 해결하고, ② 기존의 소송에 의해 수반되는 고비용, 절차 지연의 폐해를 경감하며, ③ 법정 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련의 절차”라고 정의하였다⁴⁾. 종합하면, ADR은 전통적인 소송이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모든 방법으로서 분쟁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쌍방 모두 승리하는 승-승결과(win-win outcome)에 그 목표를 두는 분쟁해결제도라고 할 수 있다 ADR의 목적은 비즈니스의 비용⁵⁾을 절감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법원 밖에서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다. 이러한 ADR은 분쟁해결에 있어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창조적인 해결 방안 모색, 분쟁상황에 적합한 분쟁해결절차, 전문가에 의한 해결, 신

2) Stephen B. Goldberg, Frank E.A. Sander, Nancy H Rogers, *Dispute Resolution: Negotiation, Mediation, and Other Process*, Little Brown & Co., 1992, pp.6-11.

3) Robert Coulson, *Professional Mediation of Civil Disputes*,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1984, p.6.

4) Jethro K. Lieberman & James F. Henry, “Lessons from the ADR Movement,” 53 U. Clev. L. Rev, Spring 1986, pp. 425-426.

5) 비용에는 시간, 금전, 생산성, 신뢰성 감정적 소멸 및 비즈니스 관계 등을 포함.

속하고 저렴한 분쟁해결, 비공개 절차 및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거래관계를 지속시켜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ADR의 활성화는 상거래 평화를 가져다 주고, 기업의 이익을 실현시키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국가이미지와도 직결된다.

ADR은 당사자들의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분쟁해결수단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ADR의 유형은 제3자의 개입여부, 개입정도 및 역할에 따라 알선⁶⁾, 조정, 중재, 조정-중재⁷⁾, 간이심리⁸⁾, 옴부즈만⁹⁾, 법원 ADR¹⁰⁾ 및 사적판결¹¹⁾ 등 다양하다.

2. 상거래분쟁의 ADR 필요성

ADR에 의한 분쟁해결제도가 관심을 갖는 배경으로는 첫째, 사회구조가 수직적 사회에서 수평적 사회로 이동하면서 법원에 의한 결정이나 법률을 통한 권위주의적 해결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당사자간 우호적 해결을 시도하려는 사회의식의 변화이다. 둘째, 인권신장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단순하고, 보다 신속하며 비용이 적게드는

-
- 6) 대한상사중재원 및 대부분 대학교재에서는 알선과 조정을 구분하였으나, 본 고에서는 알선을 조정의 범주에 포함시켜 전개하였다.
 - 7) 조정·중재(Med.-Arb.)는 제3자가 조정인을 역할을 하거나, 조정이 실패할 경우 중재인의 역할까지 하여 판정을 내리는 분쟁해결방법이다.
 - 8) 간이심리(Mini-Trial)란 B2B분쟁 시 판결결과가 예측 불가능하거나, 감정이 악화되었을 경우 기업대표들이 참석하여 제3자가 공정한 입장에서 직접 해결하는 화해의 성격을 갖는 분쟁해결제도이다.
 - 9) 옴부즈만(Ombudsman)이란 특정 조직내 구성원들의 불만이나, 고충사항 또는 행정청에 대한 민원을 제3자가 이를 대변해주고 옹호해주는 제도로서 북유럽에서 이용하여 온 제도이다.
 - 10) 법원ADR(Court Annexed ADR)이란 법원이 개입되어 행하는 ADR로서 법원중재, 법원조정, 모의배심심리 등이 있다. 우리나라 민사조정제도가 이에 해당된다.
 - 11) 사적판결(Private Judging : Rent-a-Judge)은 판사의 역할을 할 수 중립적인 제3차로 하여금 재판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제도이다.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로서 각종 법에 ADR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법원의 소송 폭증으로 인한 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따라서 ADR은 소송 대체적 절차로서 뿐만 아니라 소송 보완적 절차로도 법원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고, 행정부에서는 기존의 행정행위나 민원해결의 대체 또는 보완하는 방법으로 ADR을 이용하고 있다¹²⁾.

상거래분쟁은 전문성, 신속성 및 효율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상거래 분쟁해결제도로서 중재제도가 큰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는 것도 중재제도가 법원의 재판에 비하여 전문성, 탄력성, 신속성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아울러 중재인들이 중재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노력이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¹³⁾. 상거래분쟁에 ADR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의 재판보다 탄력성을 갖고 있다. ADR은 당해사건에 적합한 절차와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평에 의하여 판단을 함으로써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다. 둘째,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상거래는 거래종류 및 방식이 상관습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기술적인 문제들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ADR은 오랜 기간 실무를 담당해 온 전문가 또는 경험자에 의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셋째, 비밀성이다. ADR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 실추나 생산방법, 판매방법, 주요 거래처 등 영업상 비밀이 누설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넷째, 국제상거래분쟁에 적합하다. 소송은 특정국 국민인 법관이 판결을 내려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지만 중재나 조정 등 ADR에서는 당사자들이 중립적인 제3자를 선임함으로써 이러한 편견을 없앨 수 있

12) 김지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법적, 제도적 고찰-미국의 ADR제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2.12, p.7.

13) 김진억, “중재제도의 발전과 대한중재인협회의 역할”, 『중재』 2001 여름, 대한상사중재원, 2001, p.8.

다14). 다섯째, ADR은 소액분쟁에도 적합하다.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이상이 되어야 실익이 있으나, ADR은 당사자들이 서로 자신에 적합한 분쟁해결제도를 선택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즉, ADR에서는 On-Line ADR 등을 도입하면, 거리상의 문제, 시간상의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5).

이상과 같은 유용성으로 ICC의 ADR규칙16), UNCITRAL의 조정규칙17),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조정규칙18),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조정규칙19) 등 국제기구에서 분쟁의 우호적 해결과 국제상사거래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분쟁해결제도로써 ADR규칙을 제정하고 있으며, OECD에서는 전자상거래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구제수단으로서 ADR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20). 미국 AAA의 상사조정규칙21), 중국의 조정규칙22), 일본해운집회소의 조정규칙23), 런던국제법원 조정절차24) 등 국제기구 및 각국 등에서도 ADR관련 규칙이 제정되었다. 우리 나라도 2001년 대외무역법이 개정될 때 조정제도를 신설하면서 ADR방법인

14) 강이수, 「국제거래분쟁론」, 개정판, 삼영사, 2002. 7, pp.355-366.

15) 이미 선진국에서는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소비자와 전자상거래 사업자간의 분쟁을 처리하는 '가상 재판관제도'(Virtual Magistrate)나 '온라인 옴부즈만 제도'(Online Ombudsman Office) 등과 같은 ADR이 실험적으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전자거래진흥원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on line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16) ADR Rules of ICC, 2001.

17) ADR Rules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1 July 2001), Preamble Rules of Mediation UNCITRAL Conciliation Rules(1980), Article 1(Application of the Rules).

18) ICSID Rules of Procedures for Conciliation Proceedings.

19) WIPO Mediation Rules.

20) 1999년 12월 파리에서 열린OECD회의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는데, 소비자 피해구제는 ADR로 해결하도록 권고하였으며, EU에서도 전자상거래의 재판관할 및 준거법을 논의하면서 On line에 의한 ADR 촉진하는 정책선언을 함.

21) AAA Commercial Mediation Rules.

22) The CPR Mediation Procedure(1998).

23) The Conciliation Rules of the Japan Shipping Exchange(1992).

24) LCIA Mediation Procedure(1999).

선적전 검사분쟁뿐 만아니라, 일반 무역분쟁도 ADR방법인 알선, 조정 및 중재에 의한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Ⅲ. 대한상사중재원에 관한 SWOT분석

1. 강점(Strength)

(1) 국내 유일의 상거래분쟁 중재기관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중재법제정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내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설립된 후 40년 동안 중재와 알선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동안 국내의 유일한 상거래분쟁 ADR기관으로서 많은 중재 및 조정절차에 대한 know-how를 축적함으로써 그 위상을 정립하였다. 특히,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중재합의 및 강제집행 등과 관련된 중재판정 및 법원판결로 인하여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중재절차가 국내에서 정착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또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알선업무는 단순히 당사자들의 의견을 전달해주는 전달자라는 고유 업무이외에 당사자들간의 회합을 주선하여 타협에 이르게 하는 등의 조정업무까지 수행함으로써 조정업무에 대한 know-how가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축적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직원이 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2) 원장중심의 탄탄한 조직력

대한상사중재원은 원장이하 40명안밖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장을 중심으로 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탄탄한 조직력을 갖고 있다. 한편, 조직외부적으로는 한국중재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및 전자거래진흥원 등 경제관련 단체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3) 전문학술단체와의 유기적인 관계

대한상사중재원은 한국중재학회를 비롯한 무역 및 법학과 관련된 학회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학회 등을 통해 세계 경제 기구 및 각국의 중재 및 ADR 제도에 대한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국내의 ADR 활성화를 위한 많은 연구성과들을 활용하고 있다.

2. 약점(Weakness)

(1) ADR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절대적 부족

2005년 민사사건중 소액사건은 77.4%인 86만8470건이 접수되었는데²⁵⁾, 이는 ADR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에 기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즉, 대학에서 분쟁해결을 다루는 법학과에서조차도 ADR에 대한 과목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어서,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학도조차도 중재제도를 비롯한 ADR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다. 더욱이, 기타 상거래와 관련된 학문분야나 일반 국민들에 대한 인지도는 더할 나위없이 법조계보다 낮아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높으며, 변호사조차도 단심제인 중재나 조정보다는 소송에 의한 해결을 권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근 많은 대학에서 무역학과가 없어져 그나마, 국제거래분쟁해결제도로써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는 중재제도에 대한 인식은 더욱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외적인 낮은 인식도

대한상사중재원은 설립된 지 40년 동안 국내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에 있어서는 무역분쟁과 건설분쟁을, 조정에 있어서는 수출입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중재신청 건수를 보

25) <http://www.scourt.go.kr/justicesta/JusticestaViewAction.work>(2006년7월17일방문)

면 213건으로, 1996년 연간 100건, 2003년 200건을 돌파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재제도의 효용성에 비추어 볼 때, 기대만큼 중재제도가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예로서, 1991년도 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하여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가 32%이었으며²⁶⁾, 1996년도조사에서는 64%가 대한상사중재원이 클레임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²⁷⁾. 이러한 낮은 인식도는 미국중재협회와 비교해볼 때, 미국은 중재신청 건수가 알선 신청 건수보다 많은 반면 대한상사중재원은 알선 신청 건수가 중재 신청건수보다 많은 점이 차이가 나도록 하고 있다²⁸⁾.

(3)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우리 나라 사람들은 거래를 하면서 당사자간의 분쟁이 생길 것을 예견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계약체결시 미리 분쟁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상세한 계약조건과 분쟁발생시 해결방법에 대하여 상대방과 의논하는 것은 거래의 성사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²⁹⁾. 예로서, 1991년도 조사에서는 42.6%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으며,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응답자가 35.9%를 차지하였으며³⁰⁾, 1996년도조사에서는 83.8%가 offer sheet, fax 등 단순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³¹⁾. 이러한 계약서 작성에 대한 중요성 인식부족은 중재의 요건인 중재조항을 삽입하지 않게 되어 중재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6) 대한상사중재원, 「무역분쟁의 실태조사결과보고서」, 1991.12., p.35

27) 대한상사중재원, 「'96부산지역 무역분쟁 실태조사보고서」, 1996.6., p.121.

28) 이강빈, “미국과 한국의 중재기관 및 상사분쟁해결규칙 비교고찰”, 「중재논총(2001~2002)」, 대한상사중재원, 2003, p.305.

29) 손경환,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문제점과 그 활성화 방안”, 「중재논총(1991~1998)」, 대한상사중재원, 2002, p.22.

30) 대한상사중재원, 「무역분쟁의 실태조사결과보고서」, p.28.

31) 대한상사중재원, 「'96부산지역 무역분쟁 실태조사보고서」, p.16.

(4) 물적·인적 자원의 부족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규정된 법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고의 지원이 매우 미약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다. 국고에서 전적으로 행정비용이나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 법원 및 각 행정법규에서 정한 조정위원회와의 경쟁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5) 홍보 및 서비스질 향상 노력부족

물적·인적 자원의 부족은 결국 중재제도를 비롯한 ADR제도 그리고 대한상사중재원존재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이어졌으며, 새로운 업무 상품개발이나 서비스질 향상을 꾀하고 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³²⁾. 특히, 기존의 대한상사중재원의 홍보활동은 중재 및 ADR제도중심으로 이루어져 분쟁해결당사자들이 원하는 신속한 분쟁해결기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³³⁾. 따라서 고객의 욕구(needs)에 부합되는 홍보아이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6) 특정분야 전문가위주의 중재인 구성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 구성에 있어서 대부분이 법률전문가, 무역전문가 및 건설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모든 상거래를 망라한 중재인구성이 미흡하며, 외국인 중재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32)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06년 4월부터 그동안 수작업 대면계약으로 진행되던 계약체결 업무를 전자입찰로 낙찰된 계약에 한해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전자입찰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이루어지는 전자계약을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33) 중재제도에 대하여 설명되어 있는 무역학관련 서적 76권에서도 중재에 대하여는 71권이 설명되어 있었으나, ADR에 대하여는 단 2권만 소개되어 있었음.(신군재, “무역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ADR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20권, 2003.8, p.356.

(7) 제도적 문제점

1) 각 행정법규에 분산된 ADR 규정

사회구조가 고도화·복잡화되어감에 따라 여러 영역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던 바,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특별법에 의한 각종 임의적·강제적 조정제도가 창설되어 왔다³⁴⁾. 반면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와 조정·알선업무는 무역분쟁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대한상사중재원이 상설ADR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의 ADR업무는 소송절차나 각 행정법규에서 규정된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보다 그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2) 법률적 한계점

중재법 제1조에는 “이 법은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8장 보칙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상사중재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 중재법은 임의중재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상사분쟁에 한하여 기관중재를 하도록 함으로써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대외무역법상 조정에 의한 해결에 있어서도 조정위원간의 조정안을 제출할 경우에도 다수결원칙을 채택함으로써 당사자간 자체적으로 분쟁해결을 유도하기 보다는 판결유사적 결정절차를 취하고 있으며, 또한 조정합의에 대한 법적 강제성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는 일방 당사자가 시간을 끌기위한 수단으로 조정절차를 악용할 빌미를 제공하고 있어 당사자들로 하여금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2중부담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34) 손경환,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문제점과 그 활성화 방안”, 「중재논총(1991~1998)」, 대한상사중재원, 2002, p.23.

3) 중재규칙의 대법원승인

중재는 당사자자치원칙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당사자자치에 의하여, 중재인선정을 비롯한 중재절차 등을 직접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은 대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³⁵⁾. 이에 따라, 건설중재, 해상중재, 무역분쟁 등등 각각의 상거래에 적합한 중재규칙을 제정하지 못함으로써 국내 및 국제, 각 분쟁의 내용 등등에 따라 복잡다기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적합한 규칙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주무부서의 한계점

대한상사중재원의 주무부서가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이기 때문에 무역분쟁을 벗어나 그동안 새로운 업무개발에 대하여 많은 제약을 받아 온 실정이다.

(8) 기타 약점

삼성그룹, 현대그룹, SK그룹, LG그룹 등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초국가적 기업으로 성장하여 본지점간의 거래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그룹 내 분쟁을 그룹밖에서 ADR로 해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3. 기회(Opportunity)

(1) ADR에 대한 수요 증가

WTO체제하의 DDA협상과 각국이 경제적 보완관계가 있는 국가와의 FTA추진 등 국제통상환경은 자유무역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통상환경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DDA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교역량이 증가

35) 중재법 제41조(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

하고, 교역량증가는 분쟁의 증가를 가져와 국제분쟁해결제도로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는 ADR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 거래방식 및 형태의 다양화

GATT체제하에서는 주로 2차상품에 대한 교역량이 증가된 반면에 최근 국제통상환경은 1차, 3차 상품까지 포함한 모든 상품거래가 국제간에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통신 및 운송수단의 발전은 전통적인 거래방식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거래형태가 등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유형재 상품거래에서도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계약체결, 물품인도, 결제방식 등이 등장하였다. 즉, IT산업, 바이오산업, 서비스산업의 교역량 증가로 인한 새로운 거래방식은 새로운 형태의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처럼 상거래형태가 매우 빠른 속도로 다양화, 복잡화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법은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거래방식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적합한 새로운 분쟁해결방법이 필요한데,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이 ADR이다.

(3) 소송보다는 공신력있는 ADR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선호

무한경쟁시대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은 소송사건의 폭증으로 인하여 절차가 지연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기업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저하시킨다. 또한 소송은 특정 국가목적과 관계가 있어 법관이 당해 국가의 국민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국가의 식과 국민의식에 따른 편견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보다 신속하고, 국가적 편견을 없앨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공신력있는 분쟁해결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 및 경제의 전문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중재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³⁶⁾. 특히, 일본은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4년12월에 '재판외 분쟁해결 수속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ADR법)'이 공포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 수직적인 사회에서 수평적인 사회로의 전환

사회구조가 수직적 사회에서 수평적 사회로 이동하면서 법관에 의한 결정이나 법률을 통한 권위주의적 해결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당사자간 우호적 해결을 시도하려고 사회의식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과 중재 어느 한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우수한가를 가리기 위한 논의로서가 아니라 어떤 분쟁을 어느 방법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가라는 점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³⁷⁾. 또한, 인권신장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단순하고, 보다 신속하며 비용이 적게드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같은 사회욕구의 변화는 각종 법에 ADR의 하나인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5) Law School 도입

ADR제도 역시 법률 서비스이기 때문에 법조계의 도움이 필요하다. 즉, 향후 분쟁발생의 경우 중재로 해결한다는 중재조항의 삽입이나 분쟁발생시 ADR를 활용하도록 개인이나 기업에 권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등이기 때문이다³⁸⁾. 기존의 분쟁해결전문가인 판사나 변호사는 6법전서를 기초로 한 획일적인 교과과정과 사법시험에 의하여 양성됨으로써 법률적인 전문지식은 풍부한 반면에 특정 거래형태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분쟁해결기법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

36) 이호원, "중재의 다양화를 위하여", 「중재」, 2002 겨울, 대한상사중재원, 2002, p.3.

37) 상계서, p.3.

38) 김중휘, "중재제도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중재」 2004년 봄, 대한상사중재원, 2004, p.3.

식을 습득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Law School을 설립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Law School이 설립되면, ADR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을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해결보다는 전문가에 의한 해결방식인 ADR에 대한 선호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6)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분쟁해결센터건립추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상사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에 중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의 지부를 설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³⁹⁾.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내의 행정적 지원제도로써 옴부즈만사무소 및 상사조정중재기관을 구역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⁴⁰⁾. 즉, 중재뿐만 아니라 조정업무까지 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를 잘 활용하여, 동남아시아 국제상거래분쟁센터로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7) 복합무역 등 새로운 국제비즈니스

최근 무역은 단순한 상품수출입의 범주에서 벗어나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이 균형을 이루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합무역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동남아시아에서 인기가 급증하는 한류열풍으로 이에 따른 상품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영화나 드라마 산업 등에서는 ADR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다.

(8) Outsourcing의 확대

기업들이 국내외 경쟁상황이 더욱 치열해지자, 외부의 제3자가 조직

3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40) http://www.ifez.go.kr/sub5/a_e_body.asp(2006년6월1일방문)

자신보다 특정업무를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업무를 외부의 당사자에게 맡겨서 처리하는 outsourcing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outsourcing은 기업간의 크고 작은 분쟁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들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제고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outsourcing업체와 원만한 분쟁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내부전문기술, 공통적 지료, 지식 및 정보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DR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9) 남북상사분쟁중재위원회 설치

남북한 경제교류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로서 2000년도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와 후속합의서로 2003년도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분쟁해결합의서 제9조 제1항 및 제10조에 의하면, 남과 북은 각각 자기측 중재사무처리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사무처리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국내외적으로 인지도를 높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4. 위협(Threats)

(1) 중국 ADR기관의 부상

중국은 160개이상의 중재위원회중⁴¹⁾,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의 국제경제무역중재와 중국해사중재위원회(China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 CMAC로 약칭)의 해사중재로 나누고, 섭외중재의 경우는 CIETAC에서만 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CIETAC은 2002년에는 684건, 2003년도에는 709건의 중재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함

41) 중국은 2003년 현재 160개 이상이 중재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음[in Hu Li, "An Introduction to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 Dispute Resolution Journal, May-Jul. 2003, p.81].

으로써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사건을 다루는 중재기관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북경조정센터(Beijing Conciliation Centre)는 1987년 국제무역 촉진위원회(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 CCPIT)내에 설치되었으며, 중국의 대부분의 주요 지역이 이들 센터의 관할 하에 있다⁴²⁾. 북경조정센터에 의한 조정의 성공률은 80%에 이른다⁴³⁾. 이러한 중국 ADR기관의 부상은 국제적인 교역량이나 실적으로 볼 때, 아시아지역의 중심적인 분쟁해결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임으로써 대한상사중재원의 발전에 매우 위협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법적인 해결선호 증대

국내적으로는 최근 전통적인 분쟁해결인 우호적인 분쟁해결방법보다는 소액건 조차 법적인 해결을 행하고자 하는 성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며, 상대방의 전문성 내지는 역할에 대한 인정에 매우 인색한 우리 문화에 기인하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업무가 소송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해결의 효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미국의 경우, 미국의 연방법원과 지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사건 중 최종적으로 판사의 판결로서 종결되는 사건의 비율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법원에 연계된 조정, 중재, 화해 등의 소위 ADR 등으로 해결되는 것⁴⁴⁾과 대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3) 유사 ADR기관의 설립

우리나라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외에 약 30여개의 조정위원회가 법률에 의해 설치되어 있다. 행정법규에 의한 각종 임의적·강제적 조정제도는 조정절차의 결과에

42) <http://www.arbitration.org.cn/homepage/18.html>, Introduction

43) 장효상,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의 최근 동향”,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2000 겨울, p.39.

44) 김성수, “국제중재 낙수(落穗)”,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2005 겨울, p.44.

당사자들에게 강제력을 부여하는 경우도 많으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자체적인 중재기관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ADR기관의 난립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위상을 저하시킬 수 있다 하겠다.

IV. 대한상사중재원 활성화방안

1. 한국중재학회 및 관련 학회와의 유대강화

한국중재학회나 관련 학회들을 통해, 기존에 주로 연구되었던 중재제도자체에 대한 실무적, 법률적 연구, ADR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 관련규칙에 대한 연구이외에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첫째, 분쟁해결기법에 대한 내용이다. 지금까지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은 중재나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분쟁해결경험에 대한 know-how는 ADR를 진행해본 중재인 또는 조정인 개인에게만 귀속되었다. 따라서, 중재학회회원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 및 내부직원이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이라는 ADR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국형 분쟁해결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한국형 분쟁해결기법에 관한 자료를 제작하여, 변호사나 기업의 계약 및 법무담당자 그리고 대학을 대상으로 강의자료나 참고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알선경험이 많은 전·현직 중재원 직원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알선과정에서 성공 및 실패의 원인 등에 대한 경험들을 토대로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중재제도나 기타 관련제도에 대한 분쟁해결기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새로운 업무개발이다. ADR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발

회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종류의 분쟁 중에서 ADR에 의하여 해결함이 보다 효율적인 분쟁영역을 발굴하여 ADR로 흡수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업무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무영역 특히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업무영역을 1차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대한상사중재원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홍보활동을 매우 제한된 범위내에서 수동적으로 해왔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이 더욱 상설 ADR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관련분쟁, 환경분쟁, 부동산관련분쟁, 보험분쟁, 소비자관련분쟁, 전자상거래관련분쟁, 및 금융분쟁 등등 우리나라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상거래범위에 해당하는 거래까지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IT, 바이오산업 및 문화산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분야에 적합한 분쟁해결모델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서비스질의 향상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해결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소송이나 다른 ADR기관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보다 절차의 공정성, 신속성 등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비용을 저렴하게 하면서도 궁극적인 해결수단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분쟁관련용어집편찬이다. 우리나라의 ADR제도는 통해 기관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도 다르고, 업무상 다른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며, 법적인 효과도 제각기이다. 따라서, 관련 용어들을 통일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2. 홍보활동의 강화

관련 학회 등을 통해 ADR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정해지면,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중재인뿐만 아니라 실업계 및 학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홍보활동은 기존의 중재원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활동과 신규 고객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으로 구분하여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 경험자를 대상으로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브랜드 스위칭 현황⁴⁵⁾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상거래와 관련된 대학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ADR제도에 대한 홍보와 서비스분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Law school에 선정된 대학의 교과과정에 ADR관련 교과목을 증대시키고자 최우선적으로 선정된 대학의 학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비즈니스관련책⁴⁶⁾(경영학, 건축학개론, IT관련, 물류, 유통학, 보험) 등에 대한 홍보는 1차적으로 관련 전공 중재인이나 저자들의 내용중 중재와 관련된 잘못된 내용들을 수정하도록 중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홍보활동은 On Line과 Off Line으로 모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Law School 대학을 중심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미행정부와 법원에서의 ADR이용의 촉진정책에 따라 법대에서 ADR이 중요한 과목으로 자리잡고 있다⁴⁷⁾.

3. ADR분쟁센터로의 위상재정립

지난 40년동안 대한상사중재원은 상거래분쟁의 ADR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 국내외적으로 이를 인정받고 있으며, ADR에 대한 실무적인 Know-how가 축적되어 있다. 예로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에 대한 효용성이 인정되어 이를 뒷받침한다는 취지에서 중재법과 중

45) 브랜드스위칭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자사 고객이 왜 떠나가는지, 타사 고객이 왜 자사로 이동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46) 국제경영학관련서적에서는 중재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있으나, 한국의 중재제도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다시피하고, 외국의 중재제도를 설명하고 있음.

47) 서정일·김지호·윤지영·이봉숙, “조정제도의 도입 및 정착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보고서」, 대한상사중재원, 2002, p.174.

재규칙도 중재제도의 독립성과 중재판정의 확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되었다⁴⁸⁾. 이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을 미국의 하버드법대 Sander교수가 제시한 종합분쟁해결센터⁴⁹⁾처럼 국내의 종합 ADR센터를 설립하고, 각 지역에 있는 퇴역판사, 법학교수 등을 조정인으로 위촉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 ADR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법체계를 같이하는 독일처럼 당사자가 법원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해, 조정, 중재 등의 ADR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ADR전치주의를 하루빨리 국내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또한, 종합분쟁해결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중재나 조정규칙을 마련하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탄력적인 ADR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종합분쟁해결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산업자원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조정위원회를 통합하고, 이차적으로 각 행정법규에 있는 조정위원회를 통합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4. 범국가적인 지원필요

대한상사중재원이 종합분쟁센터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행정법규에 분산되어 있는 ADR기관을 통합하고, 범국가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첫째, ADR기관이 소송의 대체적인 기관으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줌으로써 ADR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무한경쟁시대에서 ADR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특정 기관을 선택하여 집중적

48) 노경래, 전개논문, p.3.

49) 1976년 미국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사법행정에 대한 대중적 불만의 원인에 대한 전국회의(the National Conference on the Causes of the Popular Dissatisfaction with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인 Pound회의에서 하버드대 교수인 Frank E.A. Sander 교수는 종합분쟁센터로서의 법원상으로 'Multi-door Court House'개념을 제시하였다.

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고 있으며, 실제 사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회의비를 지출하는 사례가 많은 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통합된 ADR기관으로서 대한상사중재원을 종합분쟁해결센터로 설립하고 집중적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을 각 지방자치단체내에 지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중재법에서 국내외 상사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에 정부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종합분쟁해결센터에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⁵⁰⁾.

5. 국내와 국제 ADR 업무의 이원화

종합분쟁해결센터로 설립하고 난 후 국내와 국제 ADR업무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국내 분쟁은 각 지방자치단체산하의 지부에서 처리하고, 국제적인 분쟁은 인천경제자유구역내에 설치된 지부에서 처리하도록 할 것이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내 분쟁센터는 동북아시아 분쟁해결센터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사무국내의 모든 문서나 언어를 영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소속 중재인단에 외국인 중재인을 50%정도를 위촉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의 내부직원들 역시 외국어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반면에, 국내 사건에서는 절차진행 면에서는 양병회교수가 제안한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해권고와 단독중재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⁵¹⁾ 효력면에서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력을 같이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50) 중재법 제40조.

51) 양병회, “중재의 활성화와 중재인의 역할”, 「중재」 2002 여름, 대한상사중재원, 2002, p.2.

6. 전문인력풀 확충과 교육강화

지적재산권, 제조물책임 등 새로운 분쟁형태의 다양화 국제거래환경의 변화는 각 분야의 분쟁해결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⁵²⁾. 대한상사중재원이 국내외 중심적인 분쟁해결센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인정되는 전문인력풀을 확충하고 유지,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와 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소송사건의 일부를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나, 중재나 조정의 성과가 결국 중재인과 조정인의 역량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양적인 면에서 중재인이나 조정인 확보는 지양하고, 각 분야에서 일정 평가기준에 의거한 전문인력을 중재인이나 조정인으로 위촉하는 질적인 확보를 지향하여야 하겠다. 또한, 중재인과 조정인은 서로 그 역할이 다르다. 즉, 중재는 원만한 타협을 행하되, 타협이 되지 않으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조정은 단순히 원만한 타협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재인이나 조정인이 분쟁에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조정은 법적 쟁점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크다 하겠다. 이는 중재인이나 조정인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⁵³⁾. 특히, 대한상사중재원이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개척하여야 하는 건설, 해상, 의료, 부동산, 보험, 거래 등의 분쟁은 증거관계와 손해액 등의 산정이 계량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워 중재인의 선정과정과 함께 중재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수한 중재인 및 조정인의 확보와 마찬가지로 한국중재학회와 공동으로 제작한 자료집을 토대로 대한변호사협회, Law School 및 사법연수원 등에서 소송, 중재, 조정절차 각각에 적합한 효율적인 분쟁해결기법

52) 상계논문, p.2.

53) 미국의 경우 판사나 검사 등 은퇴한 법조인을 위해서 "ADR법조인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조정인이나 중재인에 대한 ADR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와 함께 제3자로서의 역할 및 분쟁해결기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일정시간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조정인이나 중재인들이 분쟁해결경험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정규적인 세미나나 workshop을 개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7. 국내의 ADR기관과의 유대관계

국내에서 ADR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단기적으로는 국내 타 ADR기관과 업무협조약정 등을 체결하여야 하며, 외국의 ADR 기관들과 중재협정이외에 ADR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내국인이 외국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클레임도 실질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서비스질의 향상

대한상사중재원이 제공하는 ADR은 분쟁해결에 관한 법률서비스이다. 따라서, 좋은 상품이 있어야 구매자가 이를 구매하듯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서비스에 대한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한상사중재원의 이용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둘째, 중재원 자체내에서 형식적인 주간보고를 실질적으로 자신이 행한 업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여 자체적인 서비스향상노력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현행 조정제도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알선담당자와 기존의 조정위원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알선담당자의 분

쟁해결경험과 조정위원의 전문적 지식을 결합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9. 제도적 개선

ADR은 당사자자치원칙에 따른 분쟁해결방법이다. 현행 판결유사적 결정절차로 되어 있는 조정에 관한 내용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의 조정에 의한다고만 규정으로 수정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이 자체적인 조정규칙을 제정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되고, 당사자가 원할 경우 법적인 효력도 부여하여야 한다. 즉, 통합된 분쟁해결기관으로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행해진 조정제도에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민사조정, 소비자분쟁조정처럼 강제성을 부여하거나, 미국의 CPR처럼 당사자들의 합의를 화해판결로 하거나⁵⁴⁾, 일본처럼 중재판정을 내리도록 하는⁵⁵⁾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중재판정의 신속한 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홍콩과 싱가포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재전담 판사 또는 중재전담재판부를 두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국제통상환경은 자유무역을 그 목표로 하고 있는 DDA와 FTA로 인해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ADR정착화를 위해서는 국내 유일의 상설 ADR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활성화되어야

54) The CPR Mediation Procedure(1998) 제7조(분쟁합의)

55) The Conciliation Rules of the Japan Shipping Exchange Inc.(1999)

제14조(분쟁해결합의)와

16조(조정절차에서 중재절차로의 변경)

한다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먼저 ADR과 관련된 SWOT분석을 행하였고, 향후 ADR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9가지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내부 구성원들이 인식전환과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내부 구성원들이 무한경쟁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분쟁해결기관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언어능력 뿐 만아니라 중재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업무개발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재나 조정 등 ADR은 제3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양보다는 질적으로 언어능력과 전문지식 모두를 갖춘 전문중재인이나 조정인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에 의존하려는 국민들의 성향을 우리나라전통과 민주주의 기본 이념에 부합된 분쟁해결방법인 ADR를 적극 활용토록 대한상사중재원을 종합분쟁해결센터로 격상시키고, 자체적으로 중재나 조정 규칙을 마련토록 하는 등의 제도개혁과 더불어 재정적 지원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이수, 「국제거래분쟁론」, 개정판, 삼영사, 2002. 7.
 _____, “디지털 경제시대의 중재제도 활성화 방안”, 「중재연구」, 제15권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5.
 김지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법적, 제도적 고찰-미국의 ADR제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2.12
 김진억, “중재제도의 발전과 대한중재인협회의 역할”, 「중재」 2001 여

- 름, 대한상사중재원, 2001.
- 김중휘, “중재제도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중재」 2004년 봄, 대한상사중재원, 2004
- 노경래, “중재제도의 효용성과 활성화 방안”, 「중재」, 2003 여름, 대한상사중재원 2003.
- 대한상사중재원, 「무역분쟁의 실태조사결과보고서」, 1991.12.
- _____, 「'96부산지역 무역분쟁 실태조사보고서」, 1996.6.
- 손경환,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문제점과 그 활성화 방안”, 「중재논총(1991~1998)」, 대한상사중재원, 2002.
- 서정일·김지호·윤지영·이봉숙, “조정제도의 도입 및 정착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보고서」, 대한상사중재원, 2002.
- 신군재, “무역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ADR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20권, 2003.8,
- 양병희, “ 중재의 활성화와 중재인의 역할”, 「중재」 2002 여름, 대한상사중재원, 2002
- 이강빈, “미국과 한국의 중재기관 및 상사분쟁해결규칙 비교고찰”, 「중재논총(2001~2002)」, 대한상사중재원, 2003.
- 이철·장대련, 「국제마케팅」, 학현사, 1999.
- 이호원, “중재의 다양화를 위하여”,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2002 겨울.
- 장효상,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의 최근 동향”,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2000 겨울.
- Hu Li, “An Introduction to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 *Dispute Resolution Journal*, May-Jul. 2003.
- Jeffrey Z.Rubin, “Model of Conflict Manage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Vol.50, No.1, 1994.
- Jethro K. Lieberman & James F. Henry, “Lessons from the ADR Movement,” 53 U. Clev. L. Rev, Spring 1986,

Robert Coulson, *Professional Mediation of Civil Disputes*,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1984.

Stephen B. Goldberg, Frank E.A. Sander, Nancy H Rogers, *Dispute Resolution: Negotiation, Mediation, and Other Process*, Little Brown & Co., 1992, pp.6-11.

<http://www.arbitration.org.cn/homepage/18.html>, Introduction

<http://www.scourt.go.kr/justicesta/JusticestaViewAction.work>(2006년7월17일 방문)

ABSTRACT

A Study on the Ways to Expand the Institute of ADR to Cultivate ADR System in Korea.

-Focused on KCAB-

Koon-Jae Shin

DDA and FTA make global business environments more competitive. These environments require Korean firms to face an unlimited competition and to resolve their dispute by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us, Korean Companies should be more concerned with ADR system and should utilize ADR to settle their disput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However, ADR and KCAB isn't well recognized in Korea. So, the major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pand the recognition of ADR and KCAB through SWOT Analysis of KCAB in Korea.

Based on the results of my study, I suggest KCAB the following guidelines. First, KCAB work closely with the concerned research association as KSSA to make a guideline books of efficient dispute resolution. Second, KCAB improves their service quality and tries to utilizes various opportunity factors well. Meanwhile, Korean government assists KCAB with funds as well as improvement of dispute resolution system as the establishment of ADR Law. Consequently, to expand ADR in Korea, revolution of KCAB Staffs' consciousness and Korean government's assistance are very needed.

Key Words : ADR, KCAB, SWOT Analysis